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. 22 선고 2015나34097(본소), 2015나37867(반소) 판결
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

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. 22 선고 2015나34097(본소), 2015나37867(반소) 판결
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7. 16 선고 2013가단51868 판결

전 문

반소원고, 항소인B

반소피고, 피항소인A

변론 종결 2015. 12. 15.

판결 선고 2016. 1. 22.

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3가단51868 판결

주 문

1.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,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, 나(=다), 라, 마, 바, 사 부분 대 47m²에 관하여 2015. 12. 7.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반소 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(본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었다)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반소피고는 2012. 12. 24.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2. 10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, 반소원고는 2002. 3. 16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H 대 26m², I 대 261m² 및 위 양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2. 2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.

나.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, 4, 5, 14, 15, 19, 20, 21,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가' 지하건물부분 14m²,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21, 20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나' 및 '다'('나'와 '다' 부분은 동일 토지에 건물 층을 달리하여 중복 표시된 것이다) 1, 2층 건물부분 각 2m², 같은 도면 표시 5, 6, 13, 14,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마' 지하건물부분 10m²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, 같은 도면 표시 1, 20, 19, 15, 16, 17, 18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라' 부분 6m²와 같은 도면 표시 6, 7, 12, 13,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바' 부분 6m², 같은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'사' 주차장부분 9m²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[이하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, 나(=다),

라, 마, 바, 사 부분 대 47m²를 '이 사건 경계토지'라 한다].

다.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제1심판결 이후인 2015. 12. 7.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(이하 '이 사건 합의'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7호증, 을 제1~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 사건 경계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인규

판사전기흥

판사김지선

별지